

검 토 보 고 서

의
변

안
호

제136호

2020. 10. 21.

건 명	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 13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 13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및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가입비 지원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 및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- 공설시장 공제가입 내용 규정(안 제40조)
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(건물)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논산시장으로,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해야 함을 명시함.

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
번호

제137호

2020. 10. 21.

건명	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 13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 13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, 논산사랑 지역화폐 운영 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지역화폐 가맹점의 “지정” 을 “등록” 으로 (안 제2조, 안 제5조)
- 지역화폐의 형태를 종이형, 카드형, 모바일형으로 구분하고, 종이형 5만원권을 추가 (안 제4조)
-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의 등록 정보를 공개 하고, 취소 시에도 이를 공개(안 제7조, 안 제8조)
- 가맹점은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그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100분의 60이상으로 개정 (안 제9조)
-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는 “월 40만원, 연 400만원” 에서 “월 100만원” 으로함. (안 제14조)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
번호

제138호

2020. 10. 21.

건명	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20. 10. 13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 13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개정으로 폐수처리시설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시에서 직접 맡게 됨에 따라 그 비용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·폐수를 유입하는 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제2조(세입)에 제4호 " 입주자 부담금" 을 신설 (안 제2조)
- 제3조(세출)에 제3호 "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" 를 신설 (안 제3조)

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
번호

제139호

2020. 10. 21.

건명	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 13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 13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 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,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-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주요내용

- 특례보증 내용
- 보증조건
- 출연대상 및 출연방법

검토의견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